

자주 하는 질문 (FAQ)



총 노동인력 목록 및 인력 계획 양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?

www.marianaslabor.net 의
"Resources & Publications",
"Forms & Publications" 섹션
이나 고용서비스부에
(670) 322-0996 또는
(670) 664-3190로
전화해 구할 수 있습니다.



노동부에 인력 감축에 대한 통지를
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?

3CMC §4937법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경제 사정에 따라 현재 고용인원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인원감축 시 최소 60일 이전에 노동부에 통지해야 합니다.



외국인 근로자의 귀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?

3CMC §4954(a)법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최종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의 귀환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.

**LABOR
ENFORCEMENT
& COMPLIANCE
SECTION**

Get in touch with us!

JEFFREY T. CAMACHO

Acting Director, Labor Enforcement & Compliance
jtc@dol.gov.mp

LENICE DARIA DLR KAPILEO

Admin Specialist II
kapileolenice@gmail.com

JULIE S. TEBUTEB

LLE SPEC II
jtebuteb@gmail.com

MAGIC B. CABRERA

LLE SPEC II
mcabreradol@gmail.com

ARLENE V. RAFANAN

LLES III
arafanandol@gmail.com

NORMAN S. RASIAN

LLES III
nrasiang.dol@gmail.com

670- 322-4365

670-322-9942

670-323-9940

EUGENE A. TEBUTEB

Director, Division of Employment Services
e.tebuteb@dol.gov.m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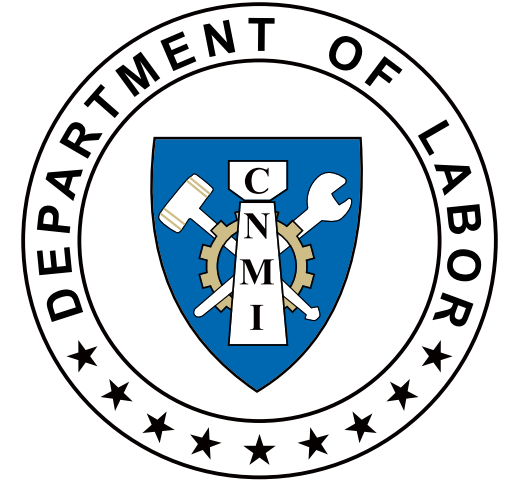
JAMES M. ULLOA

Labor Certification Supervisor
julloa@dol.gov.mp

670-322-0996

670-664-3190

PO Box 1007 Bldg 1335 Med Ave Capitol Hill 96950
www.marianaslabor.net



CNMI 고용주를 위한

정보 안내 지침서

**LABOR
ENFORCEMENT
& COMPLIANCE
SECTION**

소개

CNMI의 고용주로서 CNMI정부가 제정한 법률, 규율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이 지침서는 노동부의 일부 고용 규율과 규정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 웹사이트 www.marianaslabor.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권한

북마리아나제도 행정법 §80-20.1-001

본 노동부는 2010년의 이민 준행법 17-1 (공법 17-1) 조항, 2007년의 연방국 고용법 15-108 (공법 15-108) 조항, 개정된 최저임금 및 시간법, 그리고 개정된 공법 11-6, 12-1 1, 12-58조항에 의거해 CNMI에 거주하는 시민권, 영주권, 외국인 근로자, 그리고 이 외 비이민 외국인의 고용을 규제하는 규율을 공포하며 발행하는 바입니다.

EMPLOYMENT RULES
& REGULATIONS

BIT.LY/3N54I7V



조사

합법적인 고용 체계, 임금 및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 지급, 근무환경,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, 그리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부는 개정된 2007년의 연방국 고용법의 조항들과 부조항에 따라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 기관 간의 적절한 협정에 따라 노동부는 관련 사업자등록증, 세금, 보험 및 기타 노동 집행의 의무에서 어긋나는 사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조사 시행 시 노동부의 조사관은 검사 및 조사에 관하여 규정의 제 400조에 따라 위임 받은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. 또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할 모든 기록을 검사하고 이러한 기록의 사본을 만들수 있으며, 직원을 면접할 권한이 있습니다.

위반

개정된 2007년의 연방국 고용법, 개정된 최저임금 및 시간법, 또는 연방국의 법령에 의해 제정된 노동국의 규율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조사 당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조사관은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:

(a) 경고.

책임 당사자에게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. 만약 책임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준수하지 않고 위반 사항을 정정하지 않는다면 집행과장은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
(b) 위반 통지서.

책임 당사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 위반통지서의 발행 시 행정 청문회 사무실에 집행과장이 고소인으로 사건이 개시됩니다.

조심해야 할 위반 사항

북마리아나제도 행정법에 위반될 만한 사항들:

CNMI 노동력 목표 미달 (30%)

북마리아나제도 행정법 §80-20.1-210 조항

미 등록

북마리아나제도 행정법 §80-20.1-230 조항

구인공고 게시 불이행

북마리아나제도 행정법 §80-20.1-225(A) 조항

선의의 요구조건 미준수

북마리아나제도 행정법 §80-20.1-235(F) 조항

고용주 선언서 미제출

북마리아나제도 행정법 §80-20.1-235(G) 조항

노동력 부담 축소

- 북마리아나제도 행정법 §80-20.1-240 조항

필수기록의 미보존

북마리아나제도 행정법 §80-20.1-425, §80-20.1-501

안전한 근무환경 위반

북마리아나제도 행정법 §80-20.1-401

분기별 규정준수문서 미제출

NMIAC §80-20.1-225(A)

거주근로자 공정급여 법의 위반

북마리아나제도 행정법 §80-20.1-245